

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

(박춘희 의원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96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6일

발 의 자 박춘희 의원

찬 성 자 남진삼, 김광성, 이창열의원

1. 제안이유

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(안 제4조관련)
- 나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(안 제5조관련)
- 다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교육, 홍보(안 제6조관련)
- 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관련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1. 16. ~ 1. 24.(의회사무과-359), 의견없음.

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디지털성범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
2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5조의2의 행위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 제1호의 행위
4.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·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
4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)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,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·법률 지원
4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,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
5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,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·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·법률기관,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

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0. 5. 19.>
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신설 2020. 5. 19.>

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신설 2020. 5. 19.>
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①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
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신설 2024. 10. 16.>

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신설 2020. 5. 19., 2024. 10. 16.>

[본조신설 2020. 3. 24.]

제14조의3(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,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

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[본조신설 2020. 5. 19.]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
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
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
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신설 2020. 6. 2.>

[제목개정 2020. 6. 2.]

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

2. 제2조 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·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1. 9. 15., 2016. 3. 22., 2018. 6. 12.>

1.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)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,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·법률 지원
4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,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
5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,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·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의회 박춘희의원 |
| 연락처 | (033) 330 -2502 |